

[2011.11.28]

한국해사법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김 인 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겸 상무이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선장/법학박사]
captainihkim@korea.ac.kr**

목 차

I. 서론

II. 한국해사법정의 활용현황

III. 한국 해상분쟁 해결 전문역량의 구성요소

IV. 활용대책방안

V. 결론

I. 서론

1. 해운 조선 산업/ 무역규모의 위상

- ▷ 해운 5-6위
- ▷ 조선 1위
- ▷ 무역규모 10-11위

2. 이를 뒷받침하는 해상법의 활용과 국제적인 순위는?

II. 한국해사법정의 활용현황

1. 한국 준거법의 활용 - 당사자 자치의 원칙

(1) 나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 국내 A 선박회사의 경우

나용선	- Barecon 2001(90%) - 금융선에서 작성한 BBC 계약서(10%)	준거법 : 영국 (100%)	런던중재(90%이상), High Court(10%)
정기용선	- NYPE (100%)	영국 (100%)	런던중재(95%이상) High Court(5%)

비고: 준거법 및 관할을 한국법/한국 상사 중재 등으로 정하는 경우 없음

II. 한국해사법정의 활용현황

[2] COA 계약

- ▷ 압도적으로 영국준거법

[3] 정기선 운항= 개품운송

- ▷ 한국 준거법

[4] 선박건조계약

- ▷ 한국 선박회사(발주자)- 한국조선소: 영국준거법

[5] 해상보험

- ▷ 적하보험: 영국준거법이 절대적으로 사용됨
- ▷ 선박보험: 일부 선박보험에서는 한국준거법의 사용이 나타남
 - 한국해운조합의 선박보험 인수
- ▷ 선주상호보험조합
 - KOREA P&I, 해운 조합

II. 한국해사법정의 활용현황

* 국내B 선박회사의 경우

	보험자	준거법	재판관할
선박보험	삼성화재 외 6개 손보사(Co-insurance)	English Law and Practice (ITC Hull)	별도 규정없음
P&I 보험	BRITANNIA+STEAMS HIP MUTUAL	English law and practice	High Court in London
	KOREA P&I	대한민국 법령	대한상사중재원

2. 한국 법정 및 중재의 활용

(1) 나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용대선분쟁 소송/중재현황

구분	A 선박회사		B 선박회사		C 선박회사		소 계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소계
2006	45	2	10	0	13	0	68	2	70
2007	76	4	10	0	10	0	96	4	100
2008	33	1	22	1	6	0	61	2	63
2009	35	0	34	11	30	13	99	24	123
2010	34	0	13	1	23	1	70	2	72
계	223	7	89	13	82	14	394	34	428

(2) COA 계약

▷ A 화주, 약 14건의 장기 운송계약 - 한국 선박회사

- 100% 영국 준거법, 1/2정도 대한상사중재, 나머지 1/2 영국 해사중재

2. 한국 법정 및 중재의 활용

(3) 제품운송계약

▷ 한국 법원 - 피고의 주소지 원칙

▷ 전속적 합의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구분	A 선박회사		B 선박회사		C 선박회사		소 계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소계
2006	71	1	30	2	18	5	119	8	127
2007	53	0	32	2	9	2	94	4	98
2008	28	0	43	7	12	2	83	9	92
2009	39	2	48	6	14	1	101	9	110
2010	41	1	40	3	14	0	95	4	99
계	232	4	193	20	67	10	492	34	526

2. 한국 법정 및 중재의 활용

(4) 선박건조계약

▷ 영국 해상중재, 절대적

(5) 해상보험

- ▷ 상당수, 한국법정
 - 피고, 한국보험자인 경우, 한국법원 재판관할
 -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
 - 가해 선박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운송인에게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6) 선박충돌, 유류오염 등

- ▷ 불법행위→ 한국의 재판관할인정
- ▷ 상당수, 한국법정

(7) 선원관련

- ▷ 한국법정

2. 한국 법정 및 중재의 활용

<기타분쟁>

구분	A 선박회사		B 선박회사		C 선박회사		소 계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소계
2006	0	0	3	2	3	2	6	4	10
2007	0	0	4	2	6	5	10	7	17
2008	0	0	6	1	1	1	7	2	9
2009	0	0	3	1	8	4	11	5	16
2010	0	0	4	2	4	3	8	5	13
계	0	0	20	8	22	15	42	23	65

3. 한국 해상중재의 활용현황

(1) 해상중재

- ▷ 영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과 다름.
- 한국, 독립적 해상중재 없음
-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상중재를 겸함.
- ▷ 사중재 가능

대한 상사중재원이 처리한 해상사건의 수

	2007	2008	2009	2010
전체 처리건수	320건	262건	318건	316건
해상사건	11건 (3%)	16건 (6%)	26건 (8%)	18건 (6%)

4. 한국 민사법정의 활용

(1) 부산지방법원 민사 9부의 경우

종류	2010년도	2011년도(11월)
운송물 분쟁	1건	6건
용선 분쟁	4건	1건
선원 관련	1건	1건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0건	5건
해상보험	0건	5건
선박관련(선용품, 소유권 포함)	23건	21건
기타 항만물류 사건	0건	3건
총계	31건	40건

(2)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0부 및 제 46부 (국제거래전담부)

▷ 2007년-2008년 : 약 60~70건/년 (현재, 약40-50건)

5. 한국 해양안전심판의 활용

- ▷ 해심법
- ▷ 원인제공정도 제공
 - 선박충돌에서 연간 20여건 (중앙해심)
 - 민사분쟁의 해결기능

III. 한국 해상분쟁 해결 전문역량의 구성요소

1. 해상법 교수

번호	성함	소속기관	경력 등
1.	채이식	고려대 로스쿨	전) IMO 법률위원회 의장, 한/영 변호사
2.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현) 한국해법학회 회장
3.	정완용	경희대 로스쿨	전) 한국해법학회 회장
4.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선장출신, 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5.	정영석	한국해양대 법학과	현) 한국해법학회 감사
6.	김진권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항해사출신
7.	지상원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선장출신

1. 해상법 교수

번호	성함	소속기관	경력 등
8.	이정원	부산대 로스쿨	한진해운 사내변호사
9.	박영준	단국대 법대	해상보험법
10.	이창희	목포해양대	선장출신
11.	이원정	덕성여대국제통상학과	선박회사 근무, 해상보험법
12.	박세민	고려대 로스쿨	보험법 교수, 해상보험법
13.	한낙현	경남대 무역학과	해상보험법
14.	최세련	명지대 법대	해상변호사
15.	송옥렬	서울대 로스쿨	운송법
16.	정진우	인하대 로스쿨	물류법, 운송법

2. 해상법 변호사

번호	로펌이름	소속변호사	기타
1.	김&장	정병석,이진홍외 6명(외국 6명)	
2.	법무법인 세경	최종현, 김창준외 5명(외국 2명)	
3.	법무법인 광장	윤용석, 정진영외 수명	
4.	법무법인 태평양	강종구외 3명	
5.	법무법인 세창	김현, 송해연외 3명	
6.	법무법인 정동	서동희외 3명	
7.	선을	문광명, 권태일외 2명	
8.	청해	서영화, 임방조외 2명(외국 1명)	부산
9.	국제	이철원, 김동진외	부산
10.	삼양	유기준, 송대원외	부산

2. 해상법 변호사

번호	로펌이름	소속변호사	기타
11.	법률사무소 해원	윤기창외 3명	부산
12.	오로라	김홍경외 3명(외국1명)	
13.	지우	조성극, 윤석희외 2명(외국 2명)	
14.	법무법인 화우	유록상, 이주흥, 정해덕외	
15.	법무법인지평지성	강성, 이춘원외 2명(외국 2명)	
16.	법률사무소 선경	윤남호외 1명(외국 1명)	
17.	법무법인 을현	윤배경	
18.		김천수, 고영일	

〈2011년 11월 현재 한국해상변호사 약 60명(외국변호사 제외)〉

3. 해상관련 실무자

번호	기관	한국변호사	외국	보험법무팀	비고
1.	STX 팬오션	2명	1명	20명	총 23명
2.	현대상선	1명		13명	총 14명
3.	한진해운	2명	2명	18명	총 22명
4.	대한해운				
5.	SK 해운	-	-	11명	총 11명
6.	유코 카케리어				
7.	대양상선	1명	-	3명	총 4명
8.	장금상선			4명	총 4명
9.	고려해운	1명		5명	총 6명
10.	홍아해운			5명	
11.	Korea P&I			11명	총 11명
12.	한국해운조합			19명	본부5명/지부14명
13.	한국선급	1명		2명	총 3명

3. 해상관련 실무자

번호	기관	한국변호사	외국	보험법무팀	비고
14.	현대해상화재	3명	-	6명	총 9명
15.	삼성화재	7명	2명	8명	총 17명, 변호사=일반업무도 처리
16.	동부화재	3명	-	10명	총 13명
17.	메리츠				
18.	수산업협동조합	2명		10명	서울본부기준
19.	STX 그룹법무실	2명	10명		
20.	대우조선 해양	7명	7명	4명	변호사=공정거래, 노무, 건조계약
21.	한진중공업	3명	-	7명	변호사=계약, 소송, 자문
22.	삼성중공업	5명	5명	10명	변호사, 계약입찰, 건조계약
23.	현대중공업(그룹)	10명	10명	7명	변호사, 계약입찰, 건조계약

〈2011년 10월 현재 사내 변호사 및 클레임 담당자 약 150명〉

4. 법원 및 검찰 등 사법기관

번호	기관	담당자
1.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제46부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9부
2.	고등법원	해상사건 처리 경험자 배치됨
3.	검찰	해양담당 검사
4.	해양경찰	해기사출신 다수 포진함
5.	해양안전심판원	선장출신, 그러나 법조인 없음
6.	대한상사중재원	해상담당 팀장있음

5. 교육기관

번호	기관	
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해사수송공학과
4.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 기관공학부
5.	성균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 저널

번호	이름	발행기관	기타
1.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	1년에 2차례, kormla.or.kr
2.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년에 4차례
3.	해상보험법연구	해상보험법연구회	
4.	판례공보	법원도서관	해상판례 소개
5.	해양한국	해사문제연구소	1년에 12차례
6.	해운신문	해사신문	쇼핑 가제트 등

7. 기타 발표 외 및 재교육

번호	이름	담당기관	
1.	정기학술대회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사법학회	1년에 2-4차례
2.		한국해사문제연구소	
3.	재교육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해상법센터	1년에 한차례
4.	보험해상법 연구회	해상변호사 기타 실무자의 모임	1월에 한번씩

8. 우리나라 관련자들이 수학한 외국교육기관

번호	교육기관명	관련자	
1.	Southampton	현덕규, 이춘원 등	영국
2.	UCL	정병석, 이진홍, 이철원	영국
3.	카디프	심재두	영국
4.	LSE등	채이식	
5.	Texas Austin	김인현, 문광명	미국
6.	Tulane	서동희, 윤석희	미국
7.	싱가폴 국립대	(김인현 예정)	Fellow/VS
8.	와세다 대학	곽윤진 박사과정	일본

9. 해상법 저서 (영어 논문/ 서적도 있음)

번호	저자	저서명	기타
1.	배병태	주석 해상법	
2.	임동철	해상법 국제운송법연구	
3.	박용섭	해상법론, 정기용선계약론	
4.	이주홍	해상운송법	

번호	저자	저서명	기타
5.	이균성	해상법대계	
6.	채이식	상법강의(하), Introduction to Korean Maritime Law	영어
7.	송상현 김현	해상법원론	
8.	박대위	선하증권	
9.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해상법연구 해상법연구II(삼우사), Trna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영어
10.	최종현	해상법상론(박영사)	
11.	엄윤대	선하증권론	
12.	염정호	정기용선계약	
13	유기준	해상보험판례연구	
14	심재두	영국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길안사)	영국법
13.	정해덕	국제해사소송중재	
14.	서동희	해상보험사례연구	
15.	최준선	보험법 해상법	
16.	서헌제	컨테이너복합운송	

10. 해운관련 전문가의 역량

- ▷ **해상법 교수: 해상법 특화 교수는 5명 내외**
 - 일본, 중국에 비하여 적은 숫자
- ▷ **해상변호사: 60 여명**
 - 톱 랭크 변호사는 세계적인 수준임
- ▷ **실무자: 150 여명**
 - 영국법을 주로 처리, 한국 현실과 괴리가 존재

IV. 활용대책방안

1. 대형화주들의 운송계약체결 상대방과 분쟁해결 절차

- ▷ 외국 선사와 체결하는 경우
 - 甲의 입장에서 한국준거법과 한국 중재를
- ▷ 한국 선사와 체결하는 경우
 - 한국 준거법과 한국 중재
 - 한국해법학회 표준계약서식 활용

2. 선박회사 사이의 용선계약

- ▷ 선박소유자-다음 용선자 사이(모두 한국회사의 경우)의 가능성

3. 조선회사와 우리나라 선박회사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 ▷ 중국의 경우의 예
- ▷ 금융사와의 협력하에 한국준거법/한국법정 사용을 하나의 조건으로²⁵

IV. 활용대책방안

4. 우리나라 선박회사와 보험자사이의 선박보험계약

- ▷ 선체/적하보험의 경우
 - 준거법은 영국법이지만,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인 한국 가능
 - 영국준거법의 이유는 재보험에 있음.
 - Korean Re등을 재보험자로 하면?
 - 일본의 도쿄마린의 예- 자체 재보험가능, 일본준거법
- ▷ 외국 재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한국준거법
- ▷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규정을 현대화하고
 - 한국형 표준 선박보험증권 및 약관을 만들어야 함.

5. 우리나라 선박회사의 P&I 가입

- ▷ 한국준거법, 한국관할의 확대 계기
- ▷ 한국 P&I 성장의 필요성

IV. 활용대책방안

6. 해사중재, 판례집 발간, 해상변호사, 해상법 교수 배출 등 인프라 구축

▷ 해사중재의 발전 노력

- 일본 海運集會所의 예

▷ 우리나라 /외국 해상판례의 신속하고 체계적 소개

- 일본의 海事法 研究會誌 의 예

▷ 해상변호사와 해상법 교수의 꾸준한 배출

- 도선사 협회의 해상법 인력에 대한 지원의 예

▷ 장기 과제로 인식하여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 가칭 한국해사법정 활성화 추진위원회

- 정부, 블루 오션으로 이해하여야

- 지도력 및 업계의 재정적 지원 수반 필요

V. 결론

1. 외국 준거법/외국 관할의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우위

- ▷ 구조적인 문제 (그러나, 일본, 노르웨이의 노력)
- ▷ 영국준거법/영국법정/영국해사중재의 우수성
- ▷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중립성

2. 한국해사 법정의 발전→ 업계의 법률비용의 절감

3. 해결책

- ▷ 한국이해관계만 있는 경우는 한국준거법, 한국 중재
- ▷ 한국형 해사표준계약서의 활용(배포중) 및 개발
- ▷ 해상보험에서 외국 재보험 회피 방안
- ▷ 신속한 외국/한국 판례, 입법동향 소개 및 회람제도
- ▷ 해상변호사, 해상법 교수의 꾸준한 충원필요
- ▷ 업계의 재정적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속적 노력

